

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임병하 의원 외 23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임병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('21.4.1.시행)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,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'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'을 수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(안 제4조)

-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-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성태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 시행됨('21.4.1)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는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제1항에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.
 - 제2항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,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- 제3항에서는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어

수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12조의2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의거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.
-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은 개정규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보되,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은 3개월 이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도내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‘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’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
 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과 내용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종전규정에 따라 기 수립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(2021~2025년)에 화학사고 예방 체계, 화학사고 대비 체계,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의 화학사고 대비에 대한 일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,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, 화학사고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2020년 기준 경상북도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건수는 880개소이고, 2015년부터 2021년 2월

기준 도내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건이나 이므로

- 경상북도 차원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「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